

검사보고 자료를 제출. 필요한 검사보고 자료는 국가질검총국이 낙농품 리스크 검측 등 상황을 판단한 후 기관 사이트에 공표

(五) 수입 유제품 안전위생 항목(병원균, 잔류류, 오염물, 중금속, 불법첨가물 포함)에 불합격하면 재차 수입할 때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된 검사보고 자료를 제출하

야 함. 연속 5번 안전위생항목 불합격이 없을 경우, 재차 수입할 때 해당 검사보고 자료의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하는 검사보고를 제출하면 됨

(六) 포장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 원문 라벨 샘플, 원문 라벨 중문 번역본, 중문 라벨 샘플 등 자료 제출

(七) 검역심사가 필요한 유제품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제출
(八)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유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발급한 허가증명문건 제출

(九) 보건 기능이 있는 제품은 관련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명문건 제출
(十) 시상, 영예, 인증 표지 등 내용을 표시할 때 해외 수여 경로 확인이 가능한 증명문서 제출

제12조 수입유제품 수입상은 수입 유제품을 중국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한 것을 보증해이

하며 해당 수입 유제품의 종류, 원산지 및 브랜드를 공표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가안전기준이 없는 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발급하는 허가증명문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수입 유제품의 포장 및 운수도구는 안전위생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수입 예포장 유제품은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 및 설명서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수인 유제품은 인국화물검사검역증명을 받기 전에 검사검역기구 지정되거나 인가하

는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의 허가 없이 어떠한 업체 혹은 개인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16조 검사검역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제품검사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입

유제품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입 유제품은 동식물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수입 유제품은 검사검역에 합격하고 검사검역기구가 반입화물검사검역증을 발급한

후에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수입 유제품 반입화물검사검역증명은 제품명, 브랜드, 수출국(지역), 규격, 수 및 중량, 생산일(로트번호),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허가 없이 함부로 이전할 수 없다. 수입상은 3개 월 내 소각해야 하며 소각 상황을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유제품 수입상은 유제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마련하고 수입 유제품 반입화물 검사검역증명 번호,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 로트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자 성명 및 연락처, 납품일 등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관이 관할지역 내 수입상의 수입 및 판매기록을 점검해야 한다.

제20조 수입 유제품을 모두 가공하여 제수출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목적국가 혹은 지역의 기준 혹은 계약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하는 일국화물검사검역증명을 위해 '수출가공으로 사용 제한' 표기를 해야 한다.

제21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유제품 수령인의 신용 등 평판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입 낙농품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제품 수입상, 검역신고인, 대리인을 불량 리스트에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위법기업 명단에 기록하고 대외에 공표한다.

제 3장~제4장 생략(중국의 수출에 관련된 내용)

제5장 법률책임

제47조 검사검역이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유제품을 판매·사용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 85조, 89조 규정에 따라 위법 소득, 해당 제품 및 관련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 경영된 제품금액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물품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물품 구매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각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8조 수입상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 87조, 89조에 의거해 개정을 요구하며 경고할 수 있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한 경우 등록 자료를 취소한다.

- (一) 수입, 판매 기록제도 미수립
- (二) 수입, 판매 기록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거짓인 경우
- (三) 수입, 판매 기록 보유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 (四) 기록이 수정, 훼손, 멸실 또는 기타 사유로 진실성이 없는 경우
- (五) 위조, 수입 및 판매 기록 변조

제49조 기타 허위, 날조 행위에 대해 검사검역기구는 특별규정 제48조에 의거해 위법소득과 유제품을 몰수하고 물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50조~51조 생략

제52조 이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개정 명령하며 위법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해 최고 3만 위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없다면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一) 수입 유제품 수령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검사검역기구의 지시에 따라 불합격 유제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 (二) 본 방법 제18조의 규정을 어기거나 불합격 수입 유제품 소각 또는 반송 전에 봉인해 단독 보관하지 않은 경우
- (三) 수입 유제품 수령인이 불합격 제품을 임의로 검사검역기구 지정 또는 허가한 장소에서 전출한 경우
- (四)~(八)은 수출관련 내용으로 생략

제53조 유제품 생산자, 검사검역기구 및 관련자의 위반행위는 관련법규법칙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6장 총칙

제54조 검역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유제품 수출입 업체는 '수출입상품재검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음료용 유제품, 기타 비식용유제품의 특급배송, 우편, 인편휴대 등의 방식으로 수출입된 유제품은 국가관련 정책에 의해 처리한다.

제56조 본 법령은 국가질검총국에서 해석 책임이 있다.

제57조 본 법령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